

辨理士는 工業所有權에 관한 權益을 옹호하여 國家産業과 技術의 育成保護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特許·實用新案·意匠 또는 商標에 관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대하여야 할 事項의 代理 및 그 事項에 관한 鑑定등의 사무를 業으로 하는 專門家이다.

또 特許法은 發明을 獎勵·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발전 을 도모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辨理士(會)는 技術에 관한 高度의 知識과 法律에 관한 폭 넓은 經驗과 知識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國家의 技術과 産業을 發展시키는 데 力을 擔當해야 할 莫重한 使命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月 某 特許事務所에서는 “The Patentability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 Korea”란 資料를 發刊 배포한 바 있다. 外國으로부터의 物質特許許與壓力이 加重되어 오고있어 醫藥 및 精密化學 등 關聯業界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資料의 內容을 검토해 보던 特許法의 趣旨와 辨理士의 使命을 일시나마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리는 후문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資料에서 주장한 內容은 外國人의 主張內容과 거의 同一한 것 같다. 國內人을 상대로 하거나 對政府建議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접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되나 韓國에서의 物質特許許與의 必然性을 主張할 수 있는 理論의 근거를 外國人에게 제시하기 위한 資料라는 점에서는 많은 關聯業界에 우려를 자아내게한 점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업계의 실정이나 國家産業發展次元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결론이 아니라 먼저 物質特許

을 許與해야 한다는 結論下에 사후적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內在的 모습은 더욱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特許와 商標”誌 및 某 經濟誌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大韓辨理士會는 “特許法 改正案에 대한 意見”을 特許廳에 提出하면서 物質特許許與를 建議하였다고 한다. 기업의 特許全擔要員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本人으로서는 企業분위기로 보아 보다 慎重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辨理士와 物質特許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다.

辨理士는 工業所有權의 出願·登錄 또는 심판등에 관한 業務를 代行하는 것이 主業務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經驗과 專門知識(技術·法律) 및 良識이 입각하여 같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히 다른 업무분야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나의提言

辨理士들에게 物質特許 許與 賛反에

이와 같은 意見이 대부분 辨理士들의 同意를 얻은 것인지? 현재 化學物質과 관련된 우리나라 企業의 技術開發能力 등 技術의 배경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시된 意見인지 의문이 간다.

더우기 공공단체의 이름으로 政策決定機關인 特許廳에 提出되었다는 점과 여론形成에 큰 영향을 미치는 日刊誌에 게재되었다는 점 및 個人的 의견이 단체의 意見으로 提出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외국으로부터의 物質特許許與壓力에 대한 가장 強力한 대응수단이라 할 수 있는 업계의 反對輿論을 無力하게 하였으며 外國人의 로비활동을 위한 강력한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辨理士와 企業과는 불가분

內外國人간에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는 物質特許와 같은 問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辨理士는 業務性格上 外國人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特性을 갖고있으므로 外國인과의 긴밀한 관계維持가 必要함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外國人 出願의 占有率이 75%정도이고, 특히 化學物質關聯分野의 경우는 90% 이상을 外國人 出願이 占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實情은 辨理士가 外國人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間接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美國, 日本 등 先進國은 우리나라에 早期實施토록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國內의 相關기관(韓國發明特許協會, 大韓藥品工業協會, 遺傳子

工學研究組合, 韓國精密化學工業振興會 등) 및 研究界(KAIST, 韓國化學研究所 등)는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國內產業界나 研究界의 現實과 努力에 反하는 論理를 提示하는 것은 政策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

特許制度가 자국의 産業과 技術을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特許法은 國內의 産業界와 研究分野

바란다 즈음하여

洪 性 夏

〈東亞製藥(株) 特許課長〉

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설령 이론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國內輿論에 반하고 産業界 등의 의견에 반하는 意見이 반영되는 特許法이라면 이념적 특허법은 될 수 있어도 살아있는 법은 될 수 없다.

外國의 例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位置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보다 1人當 GNP가 높은 오스트리아·스페인·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 및 포르투갈은 醫藥特許는 물론 物質特許를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홍콩·그리스 등은 醫藥特許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덴마크·브라질·멕시코 등

“物質特許 問題에 대해서는 關聯業界의 關心이 集中되어 있음을 認識하고 技術과 産業을 實證的으로 確認한 후 慎重에 慎重을 거듭하여 公人으로서의 姿勢를…”

의 나라는 醫藥品은 制法特許도 認定하지 않고 있다. 또 “物質特許를 인정하지 않지 때문에 新物質이 開發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外國의 例를 보면 說得力이 不足하다.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파나마·말레이시아·필리핀은 모두 物質特許와 醫藥特許를 認定하고 있지만 지난 15년간 단 한건의 新規物質도 開發하지 못하였다.

반면 1979년에 비로소 醫藥特許 特許법에 대한 制法特許를 認定하기 시작한 이태리는 醫藥特許 및 制法特許를 認定하지 않던 시기에 100여종의 新規醫藥品을 開發하였으며 아직도 醫藥特許는 물론 이의 制法特許도 認定하지 않는 덴마크는 16개 품목, 멕시코 9, 오스트리아 5, 스페인이 4품목을 開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物質特許에 의한 強力한 特許保護가 곧바로 新規物質의 開發이나 技術發展에 이어질 수는 없고, 오히려 當該國家의 産業政策 즉 外國企業에 對한 自國産業保護政策, 도입기술의 消化·改良政策, 精密化學工業의 育成·發展政策 또는 산업구조나 기술개발의 育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條件下에 있으면서도 物質特許를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先進國型的 特許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그 施行은 大統領令으로 미루어 놓았다. 또한 최근 수년동안 세계각국의 特許制度를 모두 研究·檢討한 後 최근에 特許法을 制定한 中共의 경우도 物質特

許를 許與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外國의 事例를 보면 우리나라가 特許制度를 어떻게 運用해야 하는지가 自明해진다.

모든 經濟力이나 技術水準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物質特許를 早期에 導入해야 할 塲面이 빈약한 것으로 決論이 나온다.

즉 物質特許는 國家産業과 技術發展이라는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할 事項이며 또한 이 制度의 도입으로 인하여 國內의 企業이나 研究機關 중 一部만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時點에서 施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物質特許制度의 導入與否나 實施時期에 關한한 卓上論의 見解보다는 化學物質關與 研究分野나 産業分野의 實務意見이 크게 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日本의 경우 物質特許는 産業界의 建의에 의해 비로소 許與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産業界 등에서 그러한 建議가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辦理士의 입장에서 볼 때 物質特許가 許與되면 단기적으로는 受任事件이 늘어나고 營業上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防禦出願이나 改良方法에 대한 特許出願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受任事件도 줄어 결국은 辦理士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物質特許 問題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國內의 技術과 産業을 實證的으로 確認한 후 慎重에 慎重을 거듭하여 公人으로서의 자세를 지켜주기를 當付한다. ☞